

2023년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

제4차 복원정비분과위원회 회의록

- ▣ 회의일시 : 2023. 5. 23.(화), 14:00 ~ 15:20
- ▣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회의실
- ▣ 안 건 : 총 5건
 - 심의 1건(나주목 관아와 향교 내 박석 정비)
 - 보고 4건(경복궁 영훈당 권역 복원공사 등)

문 화 재 수 리 기 술 위 원 회

목 차

【심의사항】

- 1 「나주목 관아와 향교(사적)」 내 박석 정비

【보고사항】

- 2 「경복궁(사적)」 영훈당 권역 복원공사
- 3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개정(안)
- 4 「김포 덕포진(사적)」 파수청 복원 소위원회 결과 보고
- 5 문화유산 수리 교체부재 표시 기준(안) 마련

【심의사항】

안건번호 (복원 2023-4차-001)

1. 나주목 관아와 향교 내 박석 정비

가. 제안사항

-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사적 「나주목 관아와 향교」 내 박석 정비를 위하여 설계승인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나주목 관아와 향교」 내 박석 정비를 위하여 설계승인 신청한 사항임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나주시장(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)
- (2) 대상문화재명 : 나주목 관아와 향교
 - 소재지 : 전남 나주시 금계동 11-2번지 일원
 - 지정일 : 2007.07.31.
- (3) 신청내용
 - 위치 : 전남 나주시 과원동 10-5번지 일원(문화재구역)
 - 사업내용 : 금성관 주변 박석 및 배수로 정비
 - 연장 72m, 폭 2.4~8.4m, 면적 520㎡

라. 관계전문가 의견

< '23. 3. 27. ○○○(前문화재위원) >

- 현재의 나주객사 진입로 포장상태는 발굴조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부정형의 소형 박석으로 처리되어 있음
- 현재의 포장상태에서는 소형 박석의 밀도가 낮고 상태가 열악하여 보행활동에 아주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
- 역사성 측면에서도 나주객사의 격을 고려해볼 때 소형 박석포장으로 마감되었는 지에는 재고가 필요하며, 발굴조사과정에서 노출된 박석을 상부포장을 위한 정지용 재료로 재고될 필요도 있음(전주객사 조사과정에서 유사한 예가 보임)
- 특히 나주 객사가 위치한 곳은 저습한 곳으로 객사를 축조하기 위해서는

- 배수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정지작업이 요구되는 지형특성을 지니고 있음
- 설계에서 박석 포장(안)은 다양한 사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석재의 크기와 형태 등을 추출하고 있어 역사성 측면에서 신뢰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됨
- 다만, 박석포장 정비에 따른 월대 포장 정비방안에 대해서도 후속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마. 검토의견(보존정책과)

- 본 건은 나주목 관아와 향교 내 금성관 주변 박석 및 배수로를 정비하고자 설계승인 신청한 사항임
- 금성관 주변 박석은 발굴조사(2003~2005년)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정비한 것으로 현 박석은 크기 20 * 20cm 내외의 부정형이며, 이를 정다듬 화강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임
- 박석 정비의 기준에 대한 관련 자료 수집 및 고증의 선행 이후 검토가 가능하다고 사료됨

바. 의결사항

- 부결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7명 / 부결 7명

【보고사항】

안건번호 (복원 2023-4차-002)

2. 경복궁 영훈당 권역 복원공사

가. 제안사항

- 서울 소재 사적 경복궁 내 영훈당 권역 복원공사 설계의 적정성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경복궁 영훈당 권역 복원정비공사를 시행하고자 마련한 설계(안)에 대하여 수리기술위원회에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 청 인 : 문화재청장(공능유적본부)
- (2) 대상문화재명 : 경복궁(사적)
 - 소 재 지 :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61
 - 지 정 일 : 1963. 1. 21.
- (3) 신청내용
 - 사 업 명 : 경복궁 영훈당 권역 복원공사
 - 사업내용 : 경복궁 영훈당 권역 복원
 - 예정사업비 : 16,000백만원
 - 사업개요 : 영훈당 권역(영훈당, 내·외행각) 복원 및 활용기반시설 공사

라. 관계전문가 의견

- < '21. 11. 29. ○○○(前문화재위원), ○○○(문화재위원), ○○○(前문화재위원) >
- 영훈당 권역의 초장기 용도는 규명할 사료가 명확치 않으므로 향후 연구로 남겨두고 이 일대 주된 용도와 기능은 19세기 말 고종 중심으로 설정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
 - 전기등소는 향후 실내 전시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설계시 기존 경복궁배치도, 북궐도형 등의 문을 분석하여 동선을 분석, 파악하도록 함
 - 원지반은 발굴조사 수치를 고려하되, 각 영역별로 지반을 파악하여 설정함
 - 전경 위주 사진자료 뿐이지만 최대한 분석하여 지붕 높이 차이, 벽체 재

료 등을 검토, 전기등소 등의 구조, 형태도 고증해 보도록 할 것

< '22. 8. 30. ○○○, ○○○ >

- 동행각지 추가 발굴조사를 통해 영훈당 동편 일대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음
- 현재 노출된 유구는 조선후기로 확인되며 중북 유구 유무와 조선전기 및 고려시대 등 선행하는 시기의 층위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
- 영훈당 동외행각 하부 석탄부산물로 채운 줄기초는 하부 배수로 등 이전 시기 시설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부의 흔적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

< '23. 1. 5. ○○○(前문화재위원), ○○○(문화재위원), ○○○(前문화재위원) >

- 영훈당 원위치 복원시 집경당 동측 행각과 처마간섭이 발생하므로 비대칭 처마를 고려할 것
- 동외행각은 발굴 결과 퇴칸의 구성이 확실치 않으므로 지붕간 상황을 고려하여 3량가를 검토할 것
- 영훈당 권역 내 마당 경사 재검토할 것
- 용척은 시기별 건립을 고려하되 발굴유구를 기준으로 계획
- 집경당 북행각과 영훈당 북행각 사이 협문은 건물 간 직접 연결을 고려할 것

< '23. 3. 22. ○○○(前문화재위원), ○○○(문화재위원), ○○○(前문화재위원) >

- 영훈당 남외행각과 서행각의 처마는 집경당 북행각, 동행각과 간섭을 고려하여 비대칭으로 계획
- 원지형 복원시 주변 지형에 비해 다소 낮게 설치되어 영훈당 권역 침수 및 배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지형 계획하고 그에 따른 기초지정문제를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복원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계획
- 동외행각 발굴유구에 따라 1칸(3량 가)으로 계획
- 영훈당 배연시설은 발굴유구를 고려하여 본당은 북측 담장 일부를 복원하여 담장에 설치되는 굴뚝으로 계획하고 행각 배연시설은 화방벽에 설치되는 굴뚝으로 설계
- 배수로는 원형으로 복원 시 집경당과 흥복전 배수로와의 연계에 한계가 있으므로 발굴된 유구에 따르되, 원활한 배수를 위해 설치된 남측 집수정과 연결하여 계획
- 기와 제작시 발굴유구 형태와 경복궁 복원사례를 고려할 것

- 영훈당과 집경당 사이 골목은 안정성 확보와 낙수에 의한 폐임이 염려되므로 경사계획 보다 단차 및 상부 포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

< '23. 5. 11. ○○○, ○○○(문화재수리기술위원), ○○○, ○○○(문화재위원) >

- 영훈당과 집경당 서행각 처마는 집경당동, 북행각과의 간섭을 고려하여 비대칭으로 계획
- 지반정비 시 주변지형과의 관계, 침수, 배수문제와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복원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
- 동외행각은 북궐도형과 궁궐지의 기록에 따라 1.5칸(4량)으로 계획하고 굴토시 발굴기관 입회하에 동외행각 규모를 재검토함
- 발굴유구 중 재사용부재는 도면에 표기할 것
- 기둥 축렬 중심에 계획된 협문위치는 사례조사 등 재검토할 것

마. 검토의견(복원정비과)

- 본 사업은 경복궁 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 2014~2015년 발굴조사 및 2022년 동외행각지 추가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추진 중임
- 사전 협의체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동외행각은 북궐도형과 궁궐지 기록에 따라 1.5칸(4량)으로 계획하되, 굴토 시 발굴결과를 재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임

바. 의결사항

- 접수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7명 / 접수 7명

3.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개정(안)

가. 제안사항

- 현행 「문화재수리 표준 시방서」 및 「문화재수리 표준 품셈」의 개정(안)을 보고합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'22년 위탁기관(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)에서 신설·개정 조사한 사항의 반영과 기존의 오기들을 수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방서 및 품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
다. 주요 내용

(1) 신 청 인 : 문화재청장(수리기술평과장)

(2) 신청내용

- ('23년) 수리기준 개정
 - 항목 신설 : 시방서 2공종 3항목(지붕1, 미장2) / 품셈 2공종 3항목(지붕1, 미장2)
 - 항목 조정 : 시방서 2공종 3항목(지붕2, 미장1) / 품셈 적용기준 1항목, 5공종 10항목(지붕 2, 미장 5, 석 1, 단청 1, 기타 2)
 - 오류 수정 : 시방서 2공종 2항목(지붕1, 석1)
- ('23년) 수리기준 정보 조사·연구
 - 현장실사 및 실연을 통한 품셈 데이터 수집(4공종 6항목)

구분	공종	항목	조사방법	비고
신설	기단공사	가구식기단해체	실연 3회	시방서취락대비
		가구식기단설치		
	수장공사	마루해체(장마루)	실연 3회	의견수렴
		마루설치(장마루)		
모니터링	목공사	목부재조립 (신축/수리 구분)	실사	부재 재사용 활성화
	미장공사	벽체 해체 (정벌, 재벌, 초벌, 외역기)	실연 3회	의견 수렴

- 드잡이 시방기준 및 시방해설서 마련(품셈 보완)

마. 의결사항

- 접수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7명 / 접수 7명

4. 김포 덕포진 파수청 복원 소위원회 결과 보고

가. 제안사항

-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적 『김포 덕포진』 파수청 복원공사 계획에 대한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합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2023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제2차 복원정비분과 회의에서 조건부가결되어, 2023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복원정비분과 제1차 소위원회 회의(2023.5.8.)에서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.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경기도 김포시장
- (2) 대상문화재명 : 김포 덕포진(사적)
 - 소재지 : 경기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103-1번지
 - 지정일 : 1981. 9. 25.
 - 그간이력
 - 1980년 : 파수청터 발굴조사, 「덕포진 포대 발굴조사보고서」 발간
 - 1982년 : 파수청터 보호각 건립
 - 2016년 : 고층 및 복원 학술용역, 보호각 해체 및 유구 복토
 - 2019년 : 종합정비계획 수립
- (3) 신청내용
 - 사업명 : 김포 덕포진 파수청 복원공사
 - 사업지침 : 관계전문가의 자문(자문회의 필수)을 받아 김포 덕포진 파수청 복원설계를 실시한다.
 - 설계금액 : 303,900천원
 - 사업내용 : 파수청 복원공사 21.21㎡
 - 기존 자연석 배수로 해체 후 맹암거 설치
 - 기존 문화재안내판(3개소) 철거 후 신설(1개소)

라. 회의결과

(1) 2023년 제2차 위원회(23.2.28.) 의결사항 : 조건부가결

-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건물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건물 형태를 심의·검토하도록 함
- 소위원회는 장석하 위원장, 남해경 위원, 백종오 위원, 사적분과 문화재위원을 포함하고 수리기술과에서 외부 전문가를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함

(2) 2023년 제1차 소위원회 회의 의결사항 : 조건부가결

◆ <회의개요>

- ✓ 회의일시 : 2023. 5. 8.(월) 14:00 ~ 15:30
- ✓ 회의장소 : 김포 덕포진 내 사업대상지
- ✓ 회의안건 : 심의 1건(김포 덕포진(사적) 파수청 복원)
- ✓ 참석위원 :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(복원정비분과) 남해경, 백종오 위원
문화재위원회(사적분과) 김우웅 전문위원

- 덕포진 파수청(포청, 포사청)의 복원시점은 발굴결과 및 고증문헌, 그림 등 고증자료가 명확한 19C 후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함
 - 복원건물의 명칭은 고증자료를 바탕으로 포청, 포사청으로 변경하고, 관련 내용을 안내판 등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
- 복원건물 평면은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초석을 기준으로 계획하되, 공사 시행 시 기 발굴유구 기저부 추가 조사 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전·후면 초석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
- 복원건물의 측면은 대량이 없는 화방벽 구조로 하고, 내부 가구는 대량 위 판대공을 제외하고 간략한 형태의 동자주 대공으로 조정하도록 함
- 전·후면 살창은 화덕의 위치 및 포청, 포사청의 용도에 맞게 재조정하도록 함

마. 향후계획

- 소위원회 결과 반영하여 설계도서 보완하여 재제출 시 검토 후 설계승인 예정

바. 의결사항

- 접수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7명 / 접수 7명

5. 문화유산 수리 교체부재 표시 기준(안) 마련

가. 추진목적

- 문화유산 수리에 따른 교체부재 발생 시 표시 대상 명확화 및 표시사항 구체화를 통해 수리현장의 교체부재 표시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

나. 현황 및 문제점

- 문화유산 수리 중 기존 부재의 부식, 열화, 파손 등으로 불가피하게 새롭게 교체·설치되는 부재는 “교체연도” 및 “발주자명”을 표시하도록 규정*

*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의7(교체부재의 표시) 2020.12.10.

- 문화유산 수리 시 발생하는 교체부재 중 표시대상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 미비

다. 문화유산 수리 교체부재 표시기준(안) 마련

(1) 문화유산수리 교체부재 표시대상 선정 및 운영원칙

- 문화유산 수리 시 새롭게 교체되는 개별부재 중 구조적, 예술적, 기술적 가치 기준에 따라 교체부재 표시
- 발주자 및 시공자는 부재성능 저하 및 표시 효과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표시도구 및 위치를 선정하고, 부재교체 내용을 설계도서, 수리보고서에 기록 - 설계도면 및 수리보고서, 부재교체 표시기록 일체화 확인 - H-BIM 연계 강화

(2) 교체부재 표시대상

- 부재(付材) : 목재, 석재, 철물을 가공, 치목, 치석 등 예술적·기술적 요소를 가미하여 건조물의 뼈대를 구성·장식한 것(교체부재 표시)
- 재료(材料) : 부재를 만들기 위한 원천재료 상태의 목재, 석재, 철물 및 재료의 혼합을 통해 제작되는 부재(교체부재표시 제외)

(3) 교체부재 표시방법

표시사항			
표시내용 ■ 교체연도 ■ 발주자명	표시규격 5~10cm(가로) x 2~5cm(세로) ※규격 확대 축소 가능	표시위치 부재의 표면 가운데로 겹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위	표시방법 부재 재료별(목재, 석재, 금속 등) 특성 고려 ▶ 표시방법 다양화

라. 향후 추진계획

- '23. 5 ~ 6월 : 「문화유산 수리 교체부재 표시 기준」 (안) 의견수렴
 -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(보수, 복원정비, 근현대분과), 수리업체
- '23. 7월 : 「문화유산 수리 교체부재 표시지침」 제정

마. 의결사항

- 접수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7명 / 접수 7명